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41
----------	-----

제출년월일 : 2000. 2. 2

제출자 : 파주시장

□ 개정이유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주차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며,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의 일부 내용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를 종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는 것으로 확대함(안 제2조 및 제4조).

나.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범위를 종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세율의 50%을 정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확대함(안 제10조).

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종전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 임대로 범위를 확대함(안 제12조).

라.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종합
토지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를 주차장설치일 이후 5년간 면제하던 조항
을 삭제하고 주차전용 토지에 대하여도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를 주차장
설치일 이후 5년간 면제하던 조항을 삭제함.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동조제2항 본문중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등록하여”를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로 하고, “취득하는”을 “감면신청하는”으로 하며,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 본문중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는”을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취득하는”을 “감면신청하는”으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10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0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5세대 이상”을 “2세대 이상”으로 하고, “임대주택법에”를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공업배치법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를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2의”로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를 “동법 제8조의5의”로 한다.

제15조와 제16조를 각 삭제한다.

제24조의2 본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5항제2호·제3호의”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제5항의”로 하고, “동법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를 “다음 각호의 기준일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다.”로 하며 동조제1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로 하고 동조제2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에”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에”로 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소관 실·과·소		세 무 과 ☎ 940-4182
입 안 자	세 무 과 장	박 세 영
	시 세 담 당	김 찬 주
	담 당 자	정 제 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u>중상이자</u>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단서신설> 1~4. (생략)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 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 ----- ----- -----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 ----- ----- -----감면신청하는-----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
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
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
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
된 자동차세를 추정한다.

1~4. (현행과 같음)

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
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
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는 자
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
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
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
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
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
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4. (생략)

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
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
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
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
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
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신청하는-----

② (생 략)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정감한다.

1~3. (생 략)

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 보존지구안의 부동산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3.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삭 제>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재산환)을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
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
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
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
여는 면제된 재산세·종합토지세·도
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환)을 추
징한다.

제16조(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주
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
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
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
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
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이 경
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
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계산한다.

1. 연간 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

〈삭 제〉

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 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365/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24조의2(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시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5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의 단서의 규

제24조의2(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의 제4항 및 동조제5항의-----

-----다음 각호
의 기준일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

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
일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종합토지
세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에서 공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에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
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